

의안번호	제80호
의 결 연 월 일	2010년 12월 일 (제296회)

**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안**

발의자	김영주 의원 외 6인
발의연월일	2010년 11월 16일

##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안

의안번호	80
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10년 11월 16일

발의자 : 김영주 의원

최병윤·김양희·박종성

유완백·정지숙·장선배

의원

### 1. 제정이유

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필요한 행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충청북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며,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(안 제3조).
- 나. 충청북도에서 지원하는 범위를 정하고 충청북도지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.
- 다. 충청북도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부터 안 제9조).
- 라.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시장·군수 또는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).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(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)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협의함
- 다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타
  - (1) 입법예고(2010. 10. 23 ~ 11. 12) 결과 : 의견 수렴
  - (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##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적응·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북한이탈주민”이란 북한에 주소·직계가족·배우자·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.
2. “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”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,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충청북도지사 등의 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속히 정착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- ② 이 조례에 따른 정착지원은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추진하고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및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④ 시장·군수는 도지사가 수립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의 범위)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기초학력, 언어 및 사회적응 교육
2. 고충·생활·법률·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
3.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

4.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·체육행사 개최
  5.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-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충청북도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구성 등) ①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, 제1호 및 제2호는 당연직으로 한다.

1.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국장
  2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45조의 2조 따라 충청북도 시·군에 구성된 “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” 위원장
  3. 충청북도의회 의원
  4. 충청북도교육청, 충청북도지방경찰청,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근무하는 자
  5.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- ③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 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.

제6조(협의회의 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
1.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사업의 협의·조정에 관한 사항
2.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민·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회의)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 고,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(수당 등)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그 밖에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)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, 지원방법, 지원절차 등은 「충청북

도 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
- ③ 도지사는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 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④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1조(업무의 위임 및 위탁)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임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시장·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.
- ③ 도지사는 시장·군수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·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 계 법령 발췌

### □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
**제22조 (거주지보호)**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데 따른 애로사항의 해소 기타 자립·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.  
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업무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(이하 "지방자치단체장"이라 한다)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### 제17조 (취업보호등)

⑤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31조 (권한의 위임·위탁)** ① 이 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 
 ② 이 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### □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**제34조의3 (우선구매)**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"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"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를 말한다.

1. 연간 평균 7인 이상의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할 것
2. 1년 이상 월 평균근로자수의 7퍼센트 이상을 취업보호대상자로 고용할 것

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이 국가와 지

---

방자치단체기타 공공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9조 (권한의 위임)**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거주지보호업무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.

1.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·관리에 관한 사항
2.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·자료의 제공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지원에 관한 사항
3.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
4. 기타 거주지에서의 자립·정착에 관련된 사항

## □ 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지침

**제14조(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구성·운영)** ① 거주지보호기관장 및 제15조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초자치단체장은 제4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내 신변보호기관장, 사회복지관장, 주요 종교·민간단체의 장, 주요 기업체의 대표 등이 지정하는 자가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(이하 이 조에서 “지역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거주지보호기관장이 지정하는 자 또는 지역협의회에서 선임되는 자가 된다.